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 회 정기회】

- 일 시 : 2024. 1. 9.(화) 18:20
- 장 소 : 청구동주민센터 3층 패밀리카페

청구동 주민자치위원회

제 1회 청구동 주민자치위원회(정기회)

회 의 록

일 시	2024. 1. 9.(화) 18:20		장 소	청구동주민센터 3층 패밀리카페
심의안건	1. 자치회관 '키즈풋살' 프로그램 폐강 3. 2023년도 하반기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 2. 자치회관 '사물놀이' 프로그램 운영시간 연장			
○ 회의내용 - 팀 장 : 첫 번째 키즈풋살 프로그램 폐강 건임. 지난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24년도 수강생 모집 결과 정원 10명 대비 2명이 접수함. 그동안 키즈풋살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더 이상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폐강하고자 함. - 사 회 자 :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사 회 자 : 더 이상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 처리하겠음 - 팀 장 : 두 번째 사물놀이 프로그램 운영시간 연장 건임. 지난 해 상반기 자주울 저조로 폐강 논의가 있었으나, 프로그램을 유지하자는 위원님들 의견으로 자주울 향상을 위해 운영시간을 30분 줄여 현재 운영 중임. 이후 수강생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1분기 모집결과 20명이며, 수강생들이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따라서 1월부터 운영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하여 예전처럼 운영하고자 함. - 사 회 자 :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위원 : 잘된 일임. 2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겠음. - 사 회 자 : 더 이상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 처리하겠음 - 팀 장 : 마지막으로 2023년 하반기 자치회관 운영결과를 보고하겠음.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은 총 13개 프로그램과 4개의 원데이클래스, 특화사업인 청구 농부학교와 전통장담금 운영을 종료하고 저소득층 100세대에게 전통장을 나눔함. 이 외 자치회관 발표회와 작품전시를 통해 학습성취 동기를 높이고 있으며, 수입, 지출은 자료로 같음하겠음. 자세한 사항을 자료 참고 바람. - 사 회 자 :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사 회 자 : 더 이상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 처리하겠음 - 사 회 자 : 이상 1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마침				
참석위원	16명	성 명	장필기, 허상욱, 이창순, 김선애, 장흥, 이규형, 이부원, 허귀순, 김순자, 최창규, 정일호, 김영란, 강대성, 이재홍, 김영천, 곽금자	
불참위원	10명	성 명	송재천, 김익환, 김치현, 경화수, 홍춘백, 이정수, 박승일, 강우경, 유경래, 안영희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장 필 기 (인) - 동 장 엄 병 숙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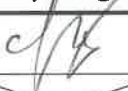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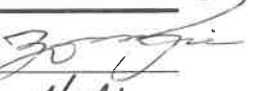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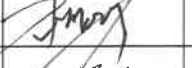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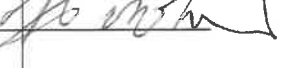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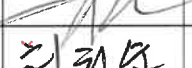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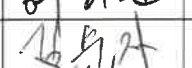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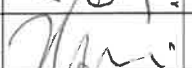
청구동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서

- 일 시 : 2024. 1. 9.(화) 18:20
- 장 소 : 청구동 주민센터(3층)
- 위 원 : 총 26명 중 참석 16명, 불참 10명
- 안 전

1. '키즈풋살' 프로그램 폐강
2. '사물놀이' 운영시간 연장
3. 2023년도 하반기 자치회관 운영결과보고

○ 심의결과 : 찬성 /반대 의결 합니다.

○ 의결서명

연번	직 위	성 명	서 명	연번	직 위	성 명	서 명
1	위 원 장	장필기		14	위 원	김영란	
2	고 문	송재천		15	위 원	강대성	
3	고 문	허상욱		16	위 원	김치현	
4	고 문	이창순		17	위 원	경화수	
5	부위원장	김선애		18	위 원	이재홍	
6	부위원장	장 흥		19	위 원	홍춘백	
7	간 사	이규형		20	위 원	김영천	
8	위 원	이부원		21	위 원	이정수	
9	위 원	허귀순		22	위 원	박승일	
10	위 원	김순자		23	위 원	강우경	
11	위 원	최창규		24	위 원	유경래	
12	위 원	정일호		25	위 원	곽금자	
13	위 원	김익환		26	위 원	안영희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 제4항에 따라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